

보도	필요	불
방법	자료제공	특집
과장		국장

기안용지

분류기호	공민
문서번호	2014-399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 10.5.3.1.
수신처	
보존기간	
시행일자	86.5.7

(전화: 060)

시행상	
특별취급	

시 상

보조	한민당중앙
기관	공민중앙
기안책임자	이재하

협조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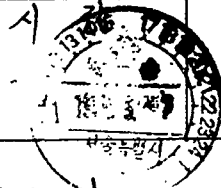
법무담당관실

문서통제



경유	
수신	각안창조
참조	

발신명의



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시설 사용료 조례 고시

제 1 안 내 우경래

고시제 289 회
5/7 회

제 목 등 기

1. 법부 02114-207 (86.5.5) 바 안면장

2.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6조 변칙규정에 의한

공원시설 사용료를 변칙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시민이

고시문자 함이다.

필 유. 고시문 1부 받.

제 2 안

수신공보관

외부 동지

1.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6조 별표의 규정이야한
공인시설사용료를 별첨과 같이 결정하였기 고시이리
하시 조치 ^{한것}

청구 괴문 1부

